

의안
번호

114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 일자 : 2015. 5. 6.(수)
- 나.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5. 5. 11.(월)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5. 5. 14.(목)

2. 제안이유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3. 주요내용

-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조항 신설(안 제24조제11항)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
 -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20일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5. 검토의견

-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제공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 중 일부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임

○ 새롭게 신설되는 제24조 11항의 경우

- 재직기간이 20년 미만도 휴가기간이 10일이고, 30년 미만도
휴가기간이 1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하게 휴가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시와
타구·군의 휴가기간은 며칠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